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대행자의 토지 등 출입 및 사용, 업무대행 근거 법률 상향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지적재조사 대행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659,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